

2026년 독립기념관 하반기 직원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우리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서류전형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한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절차 후,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므로 **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
-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

1. 작성 기본원칙

가. (성명)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

나. (학교)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

※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 기재 금지

☞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

예: 독립대학교 → 독O대학교(X), OOO학교(O), OOOO교(O), OOOOO(O)

독립대학교 학술지 '독립사학' → 독O사학(X), OOO학(O), OOOO(O)

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독립대 제0000호' → 독O대 제0000호(X), OO대 제0000호(O)

2. 필수응시자격 유의사항

가. 학위요건 충족자 : IT(전산), 전시기획 지원자 중 학위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력사항에 “전공” 기재

※ 필기합격 후 “전공”과 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제출 필수

나. 경력요건 충족자 : IT(전산), 전시기획 중 경력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경력사항에 “경력” 기재

※ 필기합격 후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다. 자격요건 충족자 : IT(전산) 자격사항에 “자격증” 기재

※ 필기합격 후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제출 필수

3. 경력·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인정)

가. 분류기준

구분	금전적 보상 有	금전적 보상 無
기재방법	경력사항으로 기재	경험사항으로 기재

나. (경력) 경력사항에 **기관(회사)명은 기재가능**하나,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X) → OO대학교 부설연구소(O)
독립기념관(O)

다. (경험) 동아리·학술연구·프로젝트 등에 직·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HKU OO동아리(X) → 동아리(O), OO동아리(O), ~관련 동아리(O)

4.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공통) 블라인드 채용 준수(직무 무관 인적사항은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나 비식별화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예)가독성 등)

나. (예외) 논문·전공 언급(내용, 과정)은 가능하나, 인적사항·**학교명 기재 금지**

II

서류전형 검토 기준 및 예시

1. 서류전형 검토 기준

가. 응시자격 적합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전 항목 0점) 처리

- (요건미흡)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2개 이상 분야 지원, 또는 1개 분야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결격해당)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심사기준

구분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	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	가점
배점(100점)	40	40	20	추가합산

※ 심사항목별 점수부여기준(평가척도)

배점	S	A	B	C	D
20	20	15	10	5	0
30	30	20	15	10	0
40	40	30	20	10	0

《채용 결격사유》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